

소득확인증명서(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)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발급번호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-	----

소득자	① 성명	② 생년월일
	③ 주소	

(단위: 원)

[]근로소득 확인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 한정

④ 귀속연도	⑤ 소득구분	원천징수의무자		⑧ 총급여(과세대상급여)액
		⑥ 법인명(상호)	⑦ 사업자등록번호	

[]종합소득 신고(결정·경정) 확인

⑨ 귀속연도	⑩ 종합(결정)소득금액	⑪ 총급여액	⑫ 근로소득 유·무	⑬ 근로 외의 소득 유·무
			[]유 []무	[]유 []무

[]연말정산 사업·연금소득 확인

⑭ 귀속연도	⑮ 연말정산 사업소득 유·무	⑯ 연말정산 연금소득 유·무
	[]유 []무	[]유 []무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총급여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인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을 ([] 충족, [] 미충족) 함을 증명합니다. 다만, 발급일 현재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급일 이후 종합소득세 결정(경정)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통보되며, 통보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의 납입액은 가입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년 월 일

세무서장 (직인)

유의사항

- ※ ‘근로소득 확인’의 총급여(과세대상급여)액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주(현)근무지의 총급여액이 표시되며, 외국인단일세를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됩니다
- ※ 증명신청일이 6. 30.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, 7. 1.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기재됩니다.
다만, 증명신청일이 6. 30. 이전 일 때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한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서식(1)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 매년 6. 30. 이전에 직직전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·결정,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고,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의 납입액은 가입시부터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